

‘26. 7.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 자 유 치 과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2026-62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시설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시설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 여
-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조례안
- 나. 비용추계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있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0조·제31조·제44조·제47조,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
- 아. 참고자료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현황(지평선산단 , 순동산업단지 및 백구농공단지 혁신지원 복합문화센터)
 - 관내 체육공원 및 관외 복합대관 시설별 이용료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군산시)
-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사무실, 편의·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2.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이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사무실, 편의·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란 시장이 근로자 및 시민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문화시설, 회의 시설, 다목적 공연실, 정보화교육장, 편의·공유시설 등을 말한다.
5. 백구농공단지 혁신지원센터란 시장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입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성한 창업지원, 수출지원, 경영지원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복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란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 복합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에 둔다.
2.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40에 둔다.
3.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순동산단1길 2-19에 둔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776-3에 둔다.

제4조(기능) 산업단지 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운영시간)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체력단련실과 탁구장은 평일 09:00부터 22:00 및 주말 10:00부터 17:00까지 운영한다.
2.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5월~10월)	동절기(11월~4월)
평일	09:00-20:00	09:00-18:00
주말	10:00-16:00	10:00-16:00

3. 순동산단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 다목적강당 및 체력단련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북카페(무인 카페), 편의점(무인 세탁방)은 평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4. 백구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중 다목적홀, 다목적실 및 다목적공연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북카페(무인카페), 편의점(무인세탁방)은 평일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5. 그 밖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일, 주말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 또는 미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산업단지 복합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보완, 점검 등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관리 및 운영)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설의 용도 및 관리) ① 시장(또는 수탁자)은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위탁 및 임대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대부료 요율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산단 복합시설을 계약 조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인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등이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시설을 협약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등이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위탁 및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 등의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는 경우

7. 그 밖의 위탁·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범위) 산업단지 복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2. 김제시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4. 그 밖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공익 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희망하는 시설에 기존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또는 수탁자)은 시설 운영 및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사용료) ① 시장은 산업단지 복합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율이 가장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 근로자 관련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나.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합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 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복합시설물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

을 배상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고 발생 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관리 주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즉시 시설물 주변을 정리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위탁 기간은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산업단지 복합시설 사용료(제13조 및 제15조 관련)

○ 산업단지 복합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시설구분	단위 (시간/일)	기본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2시간 기준	20,000원	
세미나실	2시간 기준	10,000원	
체력단련실	1개월 3개월	15,000원 40,000원	일 2시간 기준
탁구장	1개월 3개월	15,000원 40,000원	일 2시간 기준
	1시간 (1인)	2,000원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 산업단지 복합시설 체육공원 전용이용료

(단위: 원)

시설구분	단위 (시간/일)	기본사용료	비고
축구장	2시간 기준	50,000원	
풋살장	2시간 기준	20,000원	
농구장	2시간 기준	15,000원	
족구장	2시간 기준	15,000원	
체육시설 조명료	2시간 사용	30,000원	야간 사용시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관리·운영주체의 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사용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시간 이후 취소	사용료 환급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 복합시설(체력단련실 · 탁구장)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20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청인	주소					
	휴대전화		보호자 연락처			
사용시설	☐ 체력단련실 ☐ 탁구장	☐ 산단근로자 ☐ 김제시민	이용시간	☐ 주간(AM 09:00 ~ 17:00) ☐ 야간(PM 18:00 ~ 21:30) ☐ 휴일(AM 10:00 ~ 16:30)		
사용시작 사용종료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1개월(15,000원) ☐ 3개월(40,000원)		감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 시설사용을 신청하며, 본 시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_____서명(인)

▶ 운영시간 : 평일 09:00~22:00(월~금)/토·일요일: 10:00~17:00 / 법정공휴일 휴관

▶ 시설이용료 납기일 내 미 납부시 이용 신청기간 시설이용 불가(이용전 납부 필수)

신청인은 시설 사용시간으로 (오전, 야간)에 한하여 이용하겠으며, 산업단지 복합 시설물 이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서명(인) 보호자 _____서명(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산업단지 복합시설(다목적실 등)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단체명 (회사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신청인	대표자 (신청인)			
	주소			
산업단지 복합시설명	☐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용시설	☐ 다목적실(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 세미나실 ☐ 다목적실(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다목적강당			
사용기간	사용일자 : (일간) 사용시간 :			
사용목적				
참석 예정인원		사용료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복합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단체)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 ※ 사용료는 사용신청 승인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용자 주의사항
- 센터 시설이용 중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정리 및 정돈을 잘 하도록 한다.
 - 2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 복합시설(체육공원)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단체명 (회사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신청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대표자 (신청인)			
	주소			
사용시설	☐ 축구장 ☐ 풋살장 ☐ 농구장 ☐ 족구장			
운영시간 (법정공휴일 미운영)	동절기(11월~4월) 월~금 : 09:00 ~ 18:00 토~일 : 10:00 ~ 16:00		하절기(5월~10월) 월~금 : 09:00 ~ 20:00 토~일 : 10:00 ~ 16:00	
사용기간	20 ~ 20 (일간) 사용시간 : ~			
사용인원				
조명사용		사용료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평선산업단지 체육공원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시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단체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				

- ※ 사용료는 사용신청 승인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용자 주의사항(공원 내 취사 및 흡연금지)
- 시설이용 중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다음 시설 이용자를 위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 2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이용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산업단지 복합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주소(단체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목적								
사용 부대시설	마이크	조명	냉(난)방	의자	탁자	연대	살수	기타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복합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체육시설(공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 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용시설				
이용승인기간				
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복합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김제시장 귀하				
첨 부	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기능), 제9조(시설 위탁 및 임대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1) 추계기간 : 2026. 1. ~ 2030. 12.

2) 지원경비 : 인건비(3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지평선	지평선,순동	지평선,순동	지평선,순동	지평선,순동
지원금액	421,700	55,300	91,600	91,600	91,600	91,600
인 건 비	95,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사무관리비	148,500	16,500	33,000	33,000	33,000	33,000
공공운영비	145,800	16,200	32,400	32,400	32,400	32,400
행사운영비	32,400	3,600	7,200	7,200	7,200	7,2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시비) 마련

3. 작성자 : 산단관리팀장 최정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55,300	91,600	91,600	91,600	91,600	421,700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55,300	91,600	91,600	91,600	91,600	421,7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투자유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16)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투자유치과-5592 (2026.5.11.)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16) 1부.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서명생략

주무관 **이마에** 여성가족팀장 대결 2026. 5. 15. 교육가족과장 전결
협조자 **최남**
시행 교육가족과-17351 (2026. 5. 15.) 접수 투자유치과-5813 (2026. 5. 15.)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majvm6@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16		
정 책 명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투자유치과	
	담당자명	최정	전화번호 063-540-396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투자유치과)	I. 개 요 ☐ 개정 목적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건립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합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2.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제3조) 3.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5. 시설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시설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7.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8.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9.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10.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1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12.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5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투자유치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 결과 : 이견 있음 (시립도서관)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투자유치과-6401

제 목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투자유치과-5513(2026. 5. 8.)호와 관련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조회기간 : 2026. 5. 8 - 2026. 5. 15.
- 나. 조회방법 : 공문발송
- 다. 조회내용 :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 라. 조회결과 : 시립도서관 의견제출(붙임참조)

부서의견(시립도서관)	검토결과(투자유치과)
제5조(시설)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도서관(「도서관법」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2.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3. 다목적 사무실: 다목적실, 다목적 강당, 다목적공연실 등 4. 편의·공유시설: 북카페(무인카페), 편의점(무인세탁방) 5. 그 밖에 근로자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김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시간)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시설 관리 및 운영) 산업단지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이드 라인(안) 시설 입지, 구성, 성격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음.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이드 라인(안)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맞추어 지자체 직영운영 및 입주기업협의회 일부 위탁관리 참여방식으로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음.

붙임 부서 의견(시립도서관) 1부. 끝.

2026. 6. 1.

김 제 시 장

귀하

담당자

최규민

산업관리팀장

최정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김제시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투자유치과-6381

제 목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투자유치과-5427(2026. 5. 6.)호와 관련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5. 8. ~ 2026.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김제시보 제547호(2026. 5. 8.), 김제시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 및 내용 설명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끝.

2026. 6. 1.

김 제 시 장

귀하

담당자

최규민

산업관리팀장

최정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협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353(2026.6.22.)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18.(목) 09:0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대리출석 2명(경제진흥과장, 도시과장)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1	행정지원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22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23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4	2026-24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25	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6-26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27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28	시립도서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시립도서관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팀장	대결 2026. 6. 22. 기획감사실장	전결
함초자					오경준	
시행	기획감사실-8398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8	/ kirus@korea.kr	/ 부문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 4. 12.>
3. 삭제 <2010. 4. 12.>
4. 삭제 <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

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율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참고자료 :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현황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현황

□ 시설현황

- 시설명 :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 위치 :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 (백산면 산업단지 내)
- 규모 : 지상 2층 (1,100㎡)
- 층별 주요시설

1층(534㎡)	산단민원센터, 체력단련실, 기업지원실, 북카페
2층(566㎡)	다목적실, 세미나실, 탁구장 등

- 이용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인근주민
- 주요기능 : 근로자들의 자기계발과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기능 및 근로자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교류 공간의 기능
- 위치도 및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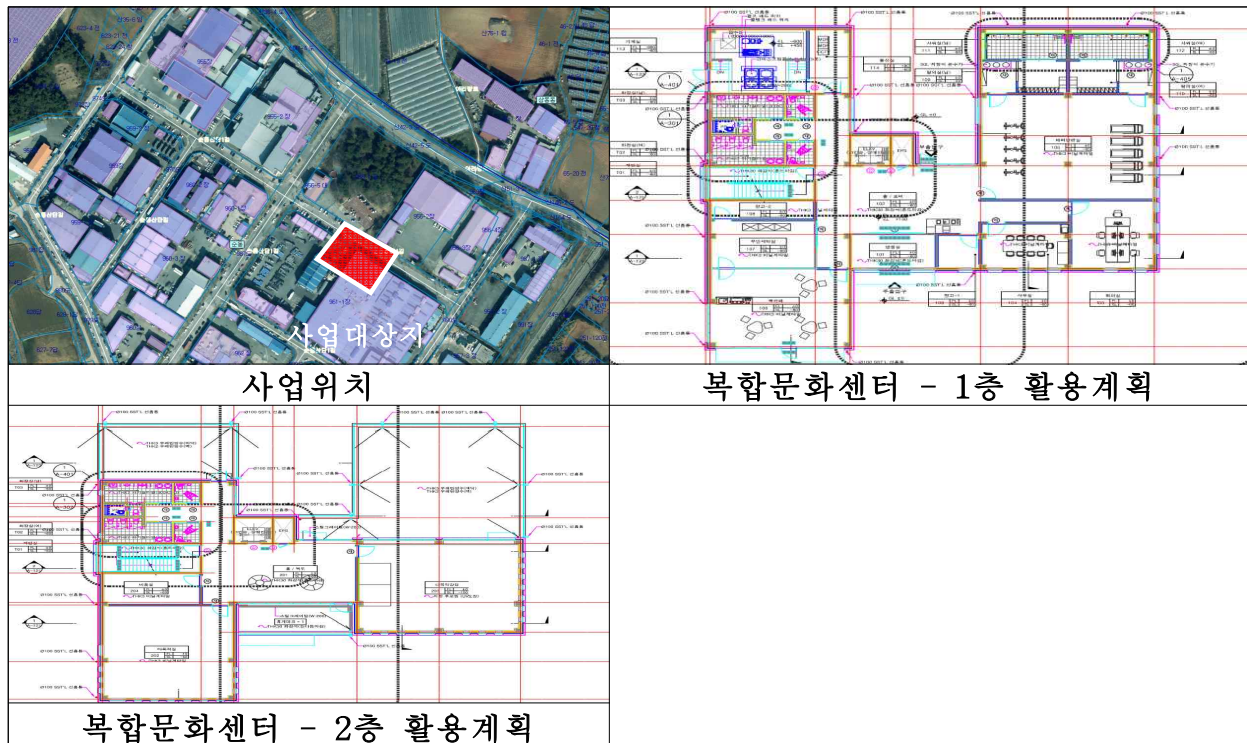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황

□ 시설현황

- 시설명 :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위치 : 김제시 순동산단1길 27-19 (순동 일반산업단지 내)
- 규모 : 지상 2층 (1,084.41㎡)
- 층별 주요시설

1층(669.66㎡)	무인세탁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사무실, 회의실 등
2층(414.75㎡)	다목적강당, 다목적실, 부속시설 등

- 이용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인근주민
- 주요기능 :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입주기업 애로 해소
- 위치도 및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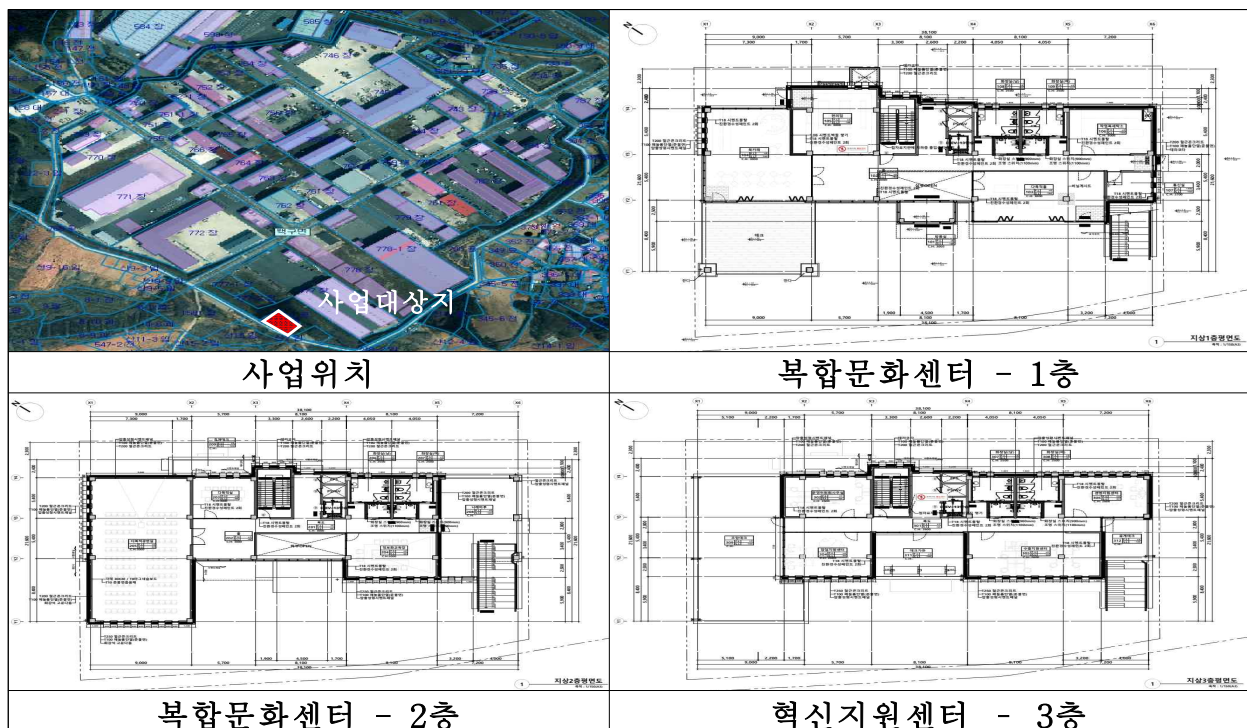
백구농공단지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현황

□ 시설현황

- 시설명 : 백구농공단지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 위치 :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776 (백구면 농공단지 내)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복합문화 970.31㎡, 혁신지원 329.9㎡)
- 층별 주요시설

1층(483.07㎡)	무인세탁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사무실, 회의실 등
2층(487.24㎡)	다목적강당, 다목적실, 비품실 등
3층(329.90㎡)	경영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사무실

- 이용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인근주민
- 주요기능 : 근로자 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기업경영·창업·수출지원, 기업애로 해소 및 네트워크 지원
- 위치도 및 조감도



□ 참고자료 : 관내 체육공원 시설별 이용료 현황

(단위: 원)

검산생활체육공원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구 분	사용목적	요금		구분	사용목적	요금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평일(휴일)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축구장	체육경기	50,000
	체육경기 외	30,000	40,000		체육경기	
풋살장	체육경기	10,000	15,000	풋살장	체육경기	20,000
	체육경기 외	20,000	30,000		체육경기	
족구장	체육경기	10,000	15,000	족구장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 외	20,000	30,000		체육경기	
야구장	체육경기	60,000	100,000	농구장	체육경기	15,000
	체육경기 외	120,000	200,000		체육경기	

비고 (공통)	○ 기준: 1일 1회 2시간 ○ 조명: 2시간 30,000원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	--

□ 참고자료 : 관외 복합대관 시설별 이용료 현황

1. 시설 전용 사용료(대관)

(단위: 원)

정읍시			김제시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체육관	2시간	40,000	다목적실	2시간	20,000
대강당	2시간	30,000	세미나실	2시간	10,000
생활문화센터	2시간	20,000	체력단련실	1개월	15,000
다목적실	2시간	20,000		3개월	40,000
운동시설	2시간	10,000	탁구장	1개월	15,000
기타	2시간	5,000		3개월	40,000

비고	정읍시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당초 금액에 50%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단체(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대관 시간에만 사용 가능
	김제시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시군명	조 례 명	제정일자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군산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08.01.
익산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3.07.14.
정읍시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정읍시 산업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3.08.09.
남원시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5.12.17.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22.10.12.
완주군	완주군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2021.08.05.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군산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분말3길 23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행정, 교양, 문화, 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부대 시설 물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6.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 : 이용일 5일전까지는 이용료의 전액 반환, 1일 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4.08.01.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등록번호	투자유치과 -526	주무관	산업관리 장	투자유치 과	생태경제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등록일자	2026. 5. 4	허정민	허정	유환근	김희수	이희서	김성기	
결재일자	2026. 5. 4							
공개구분								
회의결정내역 비상하느 김제		협 조	예 산 팀 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회법무팀장 이희라 세외수입팀장 이희수 세정과장 허근민 산업정책팀장 이희수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



김 제 시
투 자 유 치 과